

평창군살기좋은고장만들기조례안에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0년 4월 일

제안자 : 평창군수

1. 수정이유

당초 조례안중 제3조(자치기반확립)가 평창군리자치위원회조례의 기능이 중복되고 제16조(주민의역할)는 일부 강제적인 요소가 있어 중복된 부분과 강제적인 어구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고자 함.

2. 수정주요골자

가. 제3조(마을자치기반확립)

- 마을자치회 구성조항 삭제 : 리자치위원회에서 마을자치 관장
- 리자치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
 - 각 세대별 대표 1인 참여

나. 제16조(주민의 역할)

- 강제규정에 대한 어구 조정
 - --- 노력하여야 한다 ⇒ ---노력한다.
 - ---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 노력을 기울인다.
 - --- 조성해야 한다 ⇒ ---조성한다.
 - --- 생각을 버려야 한다 ⇒ --- 생각을 버린다.
 - --- 되어야 한다 ⇒ --- 된다.

평창군살기좋은고장만들기조례안에 대한수정안

평창군살기좋은고장만들기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①,②,③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④,⑤,⑥항은 삭제한다.

- ① 마을자치운영은“평창군리자치위원회설치조례”에 의한 “리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한다.
- ② 리자치위원회에서는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각 세대별 대표 1인이 참여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③ 제②항의 분과위원회는 운영분과위원회, 산업분과위원회, 봉사분과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등으로 분류하고 필요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안제16조①~⑤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항중 “노력하여야한다”를 “노력한다”로 한다.
- ②항중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를 “노력을 기울인다”로 한다.
- ③항중 “조성하여야 한다”를 “조성한다”로 한다.
- ④항중 “생각을 버려야 한다”를 “생각을 버린다”로 한다
- ⑤항중 “관광홍보요원이 되어야 한다”를 “관광홍보요원이 된다”로 한다.

조 문 대 비 표

당 초 안	수 정 안
<p>제1조 ~ 제2조(생략)</p> <p>제3조(마을자치기반확립)지방자치는 군민 모두가 스스로 운영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주민 각자가 지방자치의 주인정신으로 살기 좋은 고장만들기에 앞장선다.</p> <p>① 지방자치는 마을자치부터 시행된다는 원칙 아래 마을 주민 스스로 마을자치회를 구성·운영한다.</p> <p>② 마을자치회는 전 주민이 가입할 수 있고, 각 세대별 대표 1인 이상이 각 분과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p> <p>③ 분과위원회는 운영분과위원회, 산업분과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 봉사분과위원회 등으로 분류하고 필요시 추가 설치할 수 있다.</p> <p>④ 마을자치회는 자치회장 1인, 부회장 2인이내, 감사 2인이내를 둘 수 있다.</p> <p>⑤ 마을자치회는 마을 공동의 일을 스스로 협의·처리하며, 회의는 마을자치회에서 임의 결정한다.</p> <p>⑥ 마을자치회의 소요경비는 마을자치회의 결정에 의한다.</p> <p>제4조 ~ 제15조(생략)</p> <p>제16조(주민의 역할) 주민은 우리 고장을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지혜와 정성으로 참여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공영의 정신으로 참여한다.</p> <p>① 주민은 각 개인의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최고의 전문가가 되도록 <u>노력하여야 한다.</u></p> <p>② 주민 각 개인은 험담과 비방을 자제하고, 이웃을 칭찬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p>	<p>(당초안과 같음)</p> <p>제3조(마을자치기반확립)-----</p> <p>-----</p> <p>-----</p> <p>-----</p> <p>① 마을자치 운영은 "평창군리자치위원회설치조례"에 의한 리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한다.</p> <p>② 리자치위원회에서는 마을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세대별 대표 1인이 참여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p> <p>③ 제②항의 분과위원회는 운영분과위원회, 산업분과위원회, 봉사분과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 등으로 분류하고 필요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p> <p>④(삭제)</p> <p>⑤(삭제)</p> <p>⑥(삭제)</p> <p>(당초안과 같음)</p> <p>제16조(주민의 역할)-----</p> <p>-----</p> <p>-----</p> <p>-----</p> <p>①-----노력한다.</p> <p>②-----노력을 기울인다.</p>

당 초 안	수 정 안
<p>③ 주민 각 개인은 주변에 불우한 계층이 없는지 살피고 보호하며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u>조성해야 한다.</u></p> <p>④ 주민 각 개인은 모든 일에 솔선하여 앞장 서며, 남에게 의지하는 <u>생각을 버려야 한다.</u></p> <p>⑤ 주민 각 개인은 살기좋은 고장의 주인으로서 인정과 인심을 베푸는 여유를 갖어야 하며, 우리고장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u>관광홍보요원이 되어야 한다.</u></p> <p>제17 ~ 제18조(생략)</p>	<p>③ ----- ----- 조성한다.</p> <p>④ ----- -----, 생각을 버린다.</p> <p>⑤ ----- ----- -----관광 홍보요원이 된다. (당초안과 같음)</p>

평창군살기좋은고장만들기조례안(전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이하“군”이라 한다)이 갖고 있는 지리적 여건과 문화적 자산 등 유·무형의 가치를 군민 모두가 상호협력을 통하여 최적의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순리와 상식 그리고 인정을 바탕으로 한 국민의 고향, 살기 좋은 고장 평창을 만들기 위하여 실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의 역할) 군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군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① 군민의 화합과 역량을 결집하여 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② 자연과 인간의 건전한 조화를 통해 자연의 가치를 높이고, 자연환경의 보존과 육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③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에 노력하고 특색있는 마을 조성을 적극 권장한다.
- ④ 인정과 양심을 바탕으로 한 군정 추진으로 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군을 알리는 일에 노력한다.
- ⑤ 분야별 실천사항 추진을 위한 여건조성과 홍보활동을 통해 군민의 자율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한다.
- ⑥ 전 공직자는 주민의 대리인으로서 주민의 입장과 형편을 최대한 보살피고, 객관적 사고로 형평성에 맞게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마을자치기반 확립) 지방자치는 군민 모두가 스스로 운영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주민 각자가 지방자치의 주인정신으로 살기 좋은 고장 만들기에 앞장선다.

- ① 마을자치 운영은 “평창군리자치위원회설치조례”에 의한 “리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한다.
- ② 리자치위원회에서는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각 세대별 대표1인이 참여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③ 제②항의 분과위원회는 운영분과위원회, 산업분과위원회, 봉사분과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등으로 분류하고 필요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자치역량의 제고) 지방화 시대의 자치역량을 극대화하여 자치기반을 구축한다.

- ①군정의 공개로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 ②권리와 의무, 이익과 부담을 공유하는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천한다.
- ③세원의 발굴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한다.
- ④전입자의 정착지원과 민자유치의 촉진, 정주환경의 개선 등 인구유인을 위한 시책을 강구한다.

제5조(최고의 서비스문화 조성) 군민 모두는 인정과 양심을 바탕으로 군을 찾는 모든 이에게 친절과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①부당한 요금, 부당한 상거래 행위를 배격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을 맞이한다.
- ②불친절이나 실수에 대하여는 즉시 사과 시정하고, 고객이 원하는 것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감동의 기회로 삼는다.
- ③군에서는 서비스문화 조성을 위하여 서비스업소 교육을 실시하고, 업소별 자체교육을 적극 권장한다.

제6조(음식문화의 개선) 군민 모두는 특색있고 다양한 먹거리를 개발하여 음식문화를 선도한다.

- ①우리 고장의 농산물을 이용해 차별화된 토속음식의 개발에 주력한다.
- ②맛있고 깨끗한 먹거리를 풍성하게 제공하고, 건강한 식단 만들기로 국민건강에 이바지한다.
- ③음식문화에 경영기법 및 새로운 마케팅 도입으로 경쟁력을 확보한다.
- ④허례허식적인 음식 만들기를 억제하여 과소비와 음식물쓰레기를 최소화한다.

제7조(주거환경의 개선) 군민 모두는 자연환경과 어울리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주거환경의 조성에 힘쓴다.

- ①주택은 통나무집, 흙벽돌집 등 군의 특색을 살리고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주택을 건축하여 가치화를 실현하고, 군은 이를 적극 권장한다.
- ②생활주변에 나무와 야생화, 잔디 등을 식재하여 쾌적한 환경과 정서적으로 유익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 ③가구별, 마을별로 특색있고 개성있는 주거환경 가꾸기에 노력하여야 하며,

마을별 주거환경 개선의 날, 평가회등의 운영을 적극 권장한다.

제8조(농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군민 모두는 농축산업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고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한다.

- ①농축산업은 우리 고장의 토종을 보존하고, 품질의 고급화와 공급의 저변화를 통해 농축산물의 차별화와 우수성을 알리는데 노력한다.
- ②농업의 농업기반시설의 확충, 흙 살리기, 유기질비료 사용으로 화학비료 농약의 피해와 농산물 유전자 조작 등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는 농산물을 생산하고, 축산업의 사료기반확충, 축종별 명품화 추진으로 최고의 상품생산으로 가치품질을 인정받는 노력을 기울인다.
- ③대체작목·축종의 개발, 작부체계의 전산화를 기하고 유통망의 확충에 힘써 경쟁력 확보와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한다.
- ④새농촌 건설에 자율적인 참여와 실천으로 고향같은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과 농업을 접목시켜 관광농업을 실현한다.

제9조(산지의 활용) 산림을 푸르게 가꾸고 산림자원을 소득화 하면서 다양한 레저문화와 접목시킨다.

- ①산지의 자원화와 경영화를 위해 연구·노력함으로써 무한한 가치가 창출되도록 한다.
- ②산림을 자연휴식처화 하고, 레포츠 환경을 조성하는등 이용을 극대화 한다.
- ③청정한 숲 가꾸기·지키기로 좋은 공기, 좋은 물을 생산하여 산림자원의 혜택을 공유한다.

제10조(환경보존) 군민 모두는 환경을 잘 보존하고 가꾸어 청정환경을 우리고장의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

- ①모든 하천의 수질을 1급수로 유지관리하고 하천 생태계의 보호에 힘쓴다.
- ②개발에 있어 환경을 먼저 고려하고 인위적인 환경파괴를 원천차단하며 환경의 원상복구에 힘쓴다.
- ③환경을 파괴하고 오염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법 집행을 실시하고 공개한다.
- ④환경보존은 군민 개인의 가정에서부터 실천하고, 쓰레기는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최대화하여 우리 군을 환경 모범 자치단체로 가꾼다.
- ⑤군은 깨끗하고 풍족한 수도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군민은

수도물을 아껴 쓰고 생활하수를 줄이도록 노력한다.

제11조(문화관광진흥) 우리군의 전통문화를 발굴계승하고 관광 잠재적 요소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전통문화와 관광을 접목시켜 문화관광의 진흥에 힘쓴다.

- ① 우리의 소중한 문화와 전통을 발굴·계승하여 널리 보급한다.
- ② 산, 계곡, 단풍, 눈 등 아름다운 경관의 관광 상품화에 힘쓴다.
- ③ 모든 계층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독특한 축제와 다양한 레저스포츠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 ④ 군민 각 개인은 우리 고장의 가치를 알리고 은후한 인정을 상품화하는데 노력한다.

제12조(복지환경조성) 군민 모두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환경의 조성에 힘쓴다.

- ① 군민의 안정된 생활과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한다.
- ② 우리의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③ 소외되기 쉬운 노인을 내 부모처럼 보살피고 노인복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구한다.
- ④ 장애자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정어린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
- ⑤ 여성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근무여건의 개선에 힘쓴다.

제13조(공공시설 환경조성) 우리 군내에 있는 공공시설은 누구나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깨끗하게 항상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①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항상 개방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하도록 하고 쾌적하게 유지 관리한다.
- ② 터미널, 상가, 병원 등 다중이용 장소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휴식공간을 쾌적하게 조성한다.
- ③ 공중이용 화장실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④ 군은 공공시설에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 식수, 잔디 식재 등을 하여야 한다.

제14조(향토인재육성) 향토인재를 육성하여 지역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인다.

- ① 개인의 역량과 적성에 맞는 개성화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향토인재를 육성한다.

- ②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누구나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③ 지구촌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 자치단체와의 교류시 우수 학생교류를 적극 추진한다.

제15조(교류협력 증진) 상호 이익을 위하여 국제교류는 물론 국내교류를 적극 권장한다.

- ① 자치단체 교류는 정보의 습득과 상호이익 증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되 교류의 필요성, 효과 등을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실시한다.
- ② 자치단체간 교류시 상호 공무원 교환근무 등을 적극 추진하여 공무원의 자질과 소양을 높이는데 노력한다.
- ③ 민간단체간 교류는 자율적인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군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할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실향민이나 해외교포 그리고 도시인들이 고향처럼 생각하고 찾을 수 있도록 그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여건을 조성한다.

제16조(주민의 역할) 주민은 우리 고장을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지혜와 정성으로 참여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공영의 정신으로 참여한다.

- ① 주민은 각 개인의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최고의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한다.
- ② 주민 상호간 험담과 비방을 자제하고, 이웃을 칭찬하며, 주민 모두가 화목하게 지내는 노력을 기울인다.
- ③ 주민 각 개인은 주변에 불우한 계층이 없는지 살피고 보호하며 따뜻하고 인정이 넘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
- ④ 주민 각 개인은 모든 일에 솔선 앞장서고, 남에게 의지하려는 생각을 버린다.
- ⑤ 주민 각 개인은 살기좋은 고장의 주인으로서 인정과 인심을 베푸는 여유를 가져야 하며, 우리고장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관광 홍보요원이 된다.

제17조(재정지원) 군수는 살기좋은 고장 만들기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고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